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승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99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문승재, 김성민, 이명녀
김시현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3조 제4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관계법규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5.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2026. 8. 4. ~ 8. 10.(7일간) /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u>

관 계 법 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제284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 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이 름: 김도희
- 연락처: 290-4245